

**DB바이오헬스케어30증권투자신탁 제1호 [채권혼합] 규약변경대비표**

**(시행일:2017.11.14)**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,1-1.(생략)</p> <p>2.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3~10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,1-1.(종전과 동일)</p> <p>2.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 <u>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이상인 것)</u>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3~10(종전과 동일)</p> <p>②(종전과 동일)</p>
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가.나. ~ (생략) ~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</u>,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3~10 (생략)</p>	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가.나. ~ (생략) ~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</u>,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3~10 (생략)</p>
<p><b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 ①(생략)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,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5. (생략)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<b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 ①(종전과 동일)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,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<u>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</u>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5. (종전과 동일)</p> <p>③~④ (종전과 동일)</p>
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</b>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	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</b> <u>(삭제)</u></p>

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단, Class C-P2수익증권, Class S-P수익증권, Class C-P수익증권, Class C-PE수익증권 및 Class C-P2E수익증권의 환매시에는 부과하지 않는다.</p> <p>1.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(연금계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
<p><b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③(생략)</b></p> <p>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③(종전과 동일)</b></p> <p>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 (생략)</b>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 (종전과 동일)</b></p> <p><b>③(삭제)</b></p> <p>④(종전과 동일)</p>